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15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남인순·백혜련·조 국

서영석 · 오세희 · 신정훈

황정아 • 이기헌 • 용혜인

김 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 급여가 도입되고, 이후 교육·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, 노인·장애인 가구·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.

하지만,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며,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'비수급 빈곤층'이 2021년 기준 66만 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음.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, 보건복지부도 중장기 검토 계획임을 밝혔음.

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간 부양이 공 공부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'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'을 견지하고 있 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,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및 부양 거부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되 어 왔음.

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 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,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'최후의 사회 안전망'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 임(안 제2조제5호, 제8조의2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"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"을 "다른"으로 한다. 제8조제2항 전단 중 "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

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"을 "소

득인정액"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3항 전단 중 "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"을 "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"으로 한다.

제12조의2 중 "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"를 "제3조제2항에도"로 한다.

제12조의3제2항 전단 중 "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소득인정액"을 "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"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"를 "수급권자"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"를 "수급권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"를 "수급권자"로, "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"를 "수급권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"를 "수급권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"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"를 "수급권자"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전단 중 "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"를 "수급자"로 한다. 제23조의2제1항 중 "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"를 "수급권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수급자와 부양의무자"를 "수급자"로 한다.

제25조 전단 중 "수급자, 부양의무자 및"을 "수급자 및"으로 한다.

제26조제3항 중 "통지하여야"를 "통지하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"를 "수급권자가"로 한다.

제45조 중 "부양의무자"를 "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(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46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 또는 제2항"을 "제2항"으로, "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"를 "부정수급자에게"로, "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"를 "부정수급자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부양의무자"란 수급권자를	<u><삭 제></u>
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	
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	
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	
다만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	
의 배우자는 제외한다.	
6. ~ 11. (생 략)	6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급여의 기본원칙) ① (생	제3조(급여의 기본원칙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	② <u>다른</u>
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	
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	,,
지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다른	
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	
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	
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	
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	
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	
다.	
제8조(생계급여의 내용 등) ①	제8조(생계급여의 내용 등) ①

(처해고 가으)

(생 략)

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<u>부양</u>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생계급여 선정기준"이라 한다)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한다.

③·④ (생 략)

제8조의2(부양능력 등) ① 부양의 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- 1.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득·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
- 2. 직계존속 또는 「장애인연금 법」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

(10) ED/
② <u>소</u> 득
인정액

③·④ (현행과 같음) <<u>삭 제></u>

- 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 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
- 3. 그 밖에 질병, 교육,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-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8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.
- 1. 부양의무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
- 2. 부양의무자가 「해외이주 법」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
- 3. 부양의무자가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」 및 「치료감호법」 등에 따른 교도소, 구치소, 치료감 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
- 4.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 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5.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

-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
- 6.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 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 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 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 실을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 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 라 한다)이 확인한 경우
- 7.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 거나 거부하는 경우
- 8.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 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- ③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(제2호 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 외한다)에 따라 부양 대상 아 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 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 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.
- 제12조(교육급여) ①・② (생 제12조(교육급여) ①・② (현행과 략)

같음)

③ 교육급여 <u>수급권자는 부양</u>	③ <u>수급권자는 소득</u>
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	<u>인정액</u>
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	
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	
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	
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	
심의・의결을 거쳐 결정하는	
금액(이하"교육급여 선정기준"	
이라 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	
한다.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	
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	
50 이상으로 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2(교육급여의 적용특례)	제12조의2(교육급여의 적용특례)
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	
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	
급여와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	
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	
의 연계·통합을 위하여 <u>제3조</u>	제3조제
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	2항에도
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	
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	
권자로 본다.	
제12조의3(의료급여) ① (생 략)	제12조의3(의료급여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의료급여 <u>수급권자는 부양</u>	② <u>수급권자는 소득</u>

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
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
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
<u>그 소득인정액</u> 이 제20조제2항
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
심의 ·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
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의료급
여 선정기준"이라 한다) 이하
인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의
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
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
한다.

③ (생략)

- 제21조(급여의 신청) ①·② (생략)
 -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한다.
 - 1. ~ 3. (생 략)
 - ④ ~ ⑦ (생 략)

인정액
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급여의 신청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
<u>수급권자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신청에 의한 조사) ① 시	제22조(신청에 의한 조사) ①
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1조에	
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	
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	
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	
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	
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	
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	
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	
수 있다.	
1.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	<u><삭 제></u>
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	
사항	
2. <u>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</u> 의	2. <u>수급권자</u>
소득·재산에 관한 사항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	②
항에 따라 신청한 <u>수급권자 또</u>	<u>수급권자</u>
<u>는 그 부양의무자</u> 의 소득, 재산	
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	
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	
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	<u>수</u>
정하는 바에 따라 <u>수급권자 또</u>	급권자
<u>는 부양의무자</u> 에게 필요한 자	
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	
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급여	3

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,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④ ~ ⑦ (생 략)
- ⑧ 보장기관은 <u>수급권자 또는</u> <u>부양의무자</u>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(却下)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.
- ⑨ (생략)
- 제23조(확인조사) ①·② (생략)
 -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 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 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 구를 2회 이상 거부・방해 또 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

<u>수급권자</u>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<u>수급권자</u>
<u>.</u>
⑨ (현행과 같음)
제23조(확인조사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수급자

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 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 다. 제23조의2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제23조의2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 궈자----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 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 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_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 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 에게 금융정보 ·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 이 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 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 략)

제25조(조사 결과의 보고 등) 제2 2조, 제23조, 제23조의2 및 제2 4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 장이 수급권자, 수급자, 부양의 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 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·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 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시·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26조(급여의 결정 등) ①・②

<u>수급자</u>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조사 결과의 보고 등)
<u>수급자 및</u>
제26조(급여의 결정 등) ①・②

(생략)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 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(급 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), 급여의 종류·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 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<u>통지하</u> 여야 한다.
-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.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있다.
- 1.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등 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2. <u>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</u> 제22조제1항·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

(현행과 같음)
3
통지하고 수
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
4
<u><삭 제></u>
2. <u>수급권자가</u>

하는 경우

제45조(유류금품의 처분)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<u>부양의무자</u>가 없을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(遺留)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비용에 충당하고,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46조(비용의 징수) ① 수급자에 제46조(비용의 징수) <<u>삭 제></u>
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
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
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
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.

- ② (생 략)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징수할 금액은 <u>각각 부양의무</u>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부양의무자 또

제45	조(·	유류	금품	·의 :	처분)			
					- <u>1</u> 촌	의	직	계
<u>혈</u>	족0	나	ユ	배우	나자(/	사망	한	1
<u>촌</u>	의	직겨]혈결	주의	배우	-자늯	<u>-</u>	제
외	한디	<u>})</u>						
عاً] 4 <i>C</i>				•		λL	رارد د الد	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<u>제2항</u>--------<u>부정수급자에게</u>----------<u>부정수급자가</u>-----

<u>는</u>	부정수	구급자	<u>가</u> 이	에 응	-하지
o }1	니하는	경우	국세	또는	지방
세	체납치	분의	예에	따라	징수
한1	다.				

-----. -----.